



혁신지원단 운영 규정

제정일	2019. 4. 1
개정일	2022. 4. 1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혁신지원단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지원사업의 성공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혁신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사업)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혁신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
2.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혁신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지표 관리 감독
4. 혁신지원사업 예산배분 및 집행관리
5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 3조 (조직 및 임명) ① 혁신지원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두며,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9. 7. 1)

② 혁신지원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19. 7. 1)

제 4조 (연구원 등) 혁신지원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 등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혁신지원단의 업무와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우리 대학의 교육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위원회

제 5조 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수립, 성과관리, 규정(지침)마련 등 사업관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 (이하 ‘운영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혁신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위원, 외부전문가 및 학생대표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고,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2. 사업비 운영의 집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체평가위원회 운영
- 2. 사업비관리위원회 운영

[전문개정 2022. 4. 1]

제 6조 (삭제 2022. 4. 1)

제 7조 (삭제 2022. 4. 1)

제 8조 (삭제 2022. 4. 1)

제 8조의 2 (사업성과관리위원회) 혁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과와 그와 부수된 제반사항들을 관리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혁신지원단 내에 사업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, 혁신지원단장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신설 2020. 5. 1)

제 9조 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22. 4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